

의안번호	제 35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상정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0년 3월 4일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이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9
----------	-----

발의연월일 : 2020년 3월 4일

발 의 자 : 이상정·박우양·임영은·박문희·
이상식·이상욱 의원(6인)

1. 제안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는 도민의 책무 규정(안 제5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교육 추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등(안 제6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안 제8조)

3. 조례안 : 불 임

4.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5. 예산조치 : 1억7백만원(2020년 ~ 2024년, 도비 100%)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와 협의

7. 입법예고 : 2020.1.22 ~ 2020.2.10.(20일간, 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충북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충청북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2. 관련기관과 연계한 피해방지 교육 추진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과.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회복, 자금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제도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서민금융제도 홍보를 위한 전광판, 버스광고 및 홍보물 제작,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비용

3. 관련 조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제1호 ~ 4호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서민금융제도 홍보 위한 전광판, 버스광고 및 홍보물 제작과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등

나. 추계의 전제 : 2020년도 지원 사업비 기준 추정

다. 추계결과 : 2020 ~ 2024년(5년간) 세출 1억700만원(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천원)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107,000	7,000	20,000	20,000	30,000	30,000